

壬辰倭亂 직후 統治體制의 整備過程

—性理學的 秩序의 強化를 중심으로—

鄭 弘 俊*

머 리 말

- I. 戰後 統治秩序에 대한 政府의 認識
- II. 治安強化와 褒獎策의 施行

III. 學校教育 強化와 統治理念 普及

맺 음 말

머 리 말

조선왕조의 통치체제, 즉 지배체제 가운데 정치권력 또는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이다. 정치·경제·사상 등 제 분야의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나마 조선왕조의 통치체제에 대하여 언급되고 있다.

그 논의의 핵심점은 대체로 국가와 통치대상 일반으로서의 민과의 관계를 기본구조로 볼 것인가, 또는 국가 사족 피지배계급의 중층적 관계를 기본구조로 파악하는가로 구분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선명한 구분하에 조선왕조의 국가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토지의 소유관계를 중심으로 地主佃戶制說 혹은 국가 지주 소작의 중층적 구조설이 경제사 연구 결과 개략적으로나마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조선왕조의 통치체제에 대한 정의는 결코 간단히 결론이 내려질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필자는 이데올로기 보급 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더우기 임진왜란 직후 약 20년간(1598~1617)을 대상시기로 하여 문제의 핵심에 다가선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시작으로, 특히 왕조 체제에 심각한 동요가 일어났던 시기에 오히려 왕조정부의 통치체제의 정비과정이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상적이거나 그 통치체제를 파악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우선 임진왜란 직후 즉 17세기 초반의 상황에 대해 왕조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해결을 위하여 治安·內務·教育行政의 분야에서 각기 어떠한 대응책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려 했는가에 대하여 밝혀보고자 한다. 다시말해 임진왜란 직후 정부가 맞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한 제반

* 高麗大 講師

행정 가운데 특히 ‘教化政策’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통치체계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래서 연구대상 시기도 일단 임진왜란이 종식된 직후로부터 이 시기 특징적인 이데올로기 보급서인 『東國新續三綱行實』의 편찬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잡아본 것이다.

그런데 종래에는 ‘教化政策’이 국왕 혹은 국가의 권위를 통치대상에게 직접 확인시켜주는 작업으로 이해하여 왔다.⁽¹⁾ 특히 三綱行實과 같은 교재의 편찬 보급이야말로 가부장적 국왕의 권리를 백성에게 확인케 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²⁾ 또한 旌表를 위시한 포장책 역시 국가가 통치대상 일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만 이해하였다. 그러나 종래의 ‘教化政策’이 일원적 파악에 그쳤음에 반해, 필자는 그것이 지방사족을 매개로 하여 실현되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중심 소재가 조선왕조정부의 ‘教化政策’이므로 자연 주 자료는 《朝鮮王朝實錄》과 그 밖의 정부측 자료에 의존하였다. 특히 《東國新續三綱行實》은 종래 이용되지 않은 사료로서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주 자료임을 아울러 밝혀둔다. 지금까지 성리학 혹은 유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연구가 특정 교재 또는 특정 문집을 주 자료로 하여 그 사상사적 고찰에 치중한테 반해, 이 글은 성리학적 사회윤리의 보급구조를 實錄 등 정부측 연대기적 자료를 이용하여 밝히고 있다는 데 또 다른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 戰後統治秩序에 대한 政府의 認識

각각의 사회정치적 처지에 따라 임진왜란 직후 상황에 대한 인식은 각기 상이하게 드러날 것이지만, 봉건권력의 담당자인 조선왕조정부가 그 통치대상인 민의 동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명이 선결작업으로 될 것이다. 즉 정부의 전후 상황 특히 민의 동향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정책입안의 바탕과 그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선 전후 민심의 소재가 정부가 아닌 또 다른 대상으로 전이하고 있었는지가 당시 민의 동향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다.

다음의 자료는 종전 후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중앙관료가 파악한 민의 사상적 동향의 일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난리 이후……10년 이래 인심이 무지하고 邪說이 멋대로 떠도는데도 다시 막지 않아서, 愚民이 迷

(1) 李丙燾, 〈東國新續三綱行實 解題〉, 《東國新續三綱行實》(國立圖書館 影印本, 1958), pp. 5-13

平木實, 〈朝鮮王朝初期의 旌表教化政策について〉, 《朝鮮學報》81, 1976

朴 珠, 〈朝鮮初期의 旌表者에 대한 一考察——孝子·烈女를 中心으로——〉, 《史學研究》37, 1983

(2) 平木實, 앞의 논문, pp. 295-299

惑되어 남자는 居士라 하고 여자는 社堂이라 일컫으면서 자신의 본업을 일삼지 않고, 중의 행색에 걸식하러 다니면서 서로 끌어들이어 그 무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州縣에서는 금지해야 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민간에는 상하가 모두 그러하여, 중에게 시주하여 부처를 공양하거나 佛門에 들어가 부처를 섬기는 자가 또한 많이 있다. 게다가 士大夫도 더러는 마음을 기울여 부처를 받들면서 괴이하고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한다.⁽³⁾

왕조정부는 일단 성리학 이외의 여타사상을 ‘妖言惑衆之說’로 규정하고, 이와같은 체제외적 사상으로의 경도현상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시된 자료에서 보이는 ‘居士’ 또는 ‘社堂’은 反儒敎의 존재로서, 정부는 이들의 성장이 통치질서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문제삼고 있다.

‘聖人’ ‘神人’ ‘生佛’ ‘濟世’ ‘居士’ 등의 칭호를 사용하면서 등장하는 일련의 인물들은 나름대로 새로운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민간에 깊이 침투하였다.⁽⁴⁾ 지배계급의 논리와는 달리 꼭 남자가 아니어도 또는 어른이 아니어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⁵⁾ 그리고 그들은 萬人同甲會 등을 조직하여 세력확장을 도모하기도 하였다.⁽⁶⁾ 특히 임진왜란시 惟正 休正 등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승려의 활약은 국가로부터 兩宗의 부활을 인가받았으며,⁽⁷⁾ 이같은 조치가 민간불교의 확산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즉 제한적이거나 불교의 양성화는 잠복해 있던 민간불교가 표면화할 수 있는 명분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난후 성리학 이념을 내세워 온 왕조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한 민이 불교 등에 쉽게 경도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분위기는 불교도들이 都城의 彰義門 밖에 水陸會를 개최하여 수많은 都城의 남녀가 撤市하고 참여할만큼 고조되었다.⁽⁸⁾ 심지어 士族내에서도 번져갔던 체제외적 사상으로의 경도현상은 이 시기 왕조정부가 맞이한 사상적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士族이 불교에 경도된 사례로는 유명한 許筠의 일화가 있으며,⁽⁹⁾ 난후 소설 가운데도 儒生들이 산에 들어가 佛徒가 된 사례가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는 점도 좋은 예이다.⁽¹⁰⁾ 그리고 의병장 출신 郭再祐가 道家에 경도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¹¹⁾

그런데 이와같은 성리학 이외의 사상으로 경도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부의 인식정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정부는 그 원인을 敎化政策이 전적으로 중단된 데 있다고 보고, 敎化政策을 재개하여 민을 ‘妖言惑衆之說’로 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

(3) 《宣祖實錄》, 宣祖 40年 5月 丙寅條. “亂離之後……十許年來 人心質質 邪說肆行 無復禁檢 愚民迷惑 男爲居士 女稱社堂 不事其事 緇服乞食 互相誘引 其徒寔繁 州縣不知禁止……閭閻之間 上下靡然 飯僧供佛 捨身設齋者 亦多有之 而士大夫 亦或傾心奉佛 不知恠恥”

(4) 《宣祖實錄》 宣祖 37年 12月 丙午; 《光海君日記》 光海君 4年 2月 癸未條.

(5) 《宣祖實錄》 宣祖 35年 5月 丙寅條, “亂離以後 人甚好恠 男女無小長 以居士自稱 變其服飾 鼓倡妖說 或聚或散”

(6) 《宣祖實錄》 宣祖 35年 5月 癸未條. “至有居士爲號者 設萬人同甲之會 一道奔波 舉境填咽”

(7) 《宣祖實錄》 宣祖 33年 正月 壬申條.

(8) 《宣祖實錄》 宣祖 39年 6月 己亥條.

(9) 《宣祖實錄》 宣祖 40年 5月 丙寅條.

(10) 許筠, 〈南宮先生傳〉《李朝漢文小說選》(普成文化社, 1978), p. 33.

(11) 《宣祖實錄》 宣祖 40年 5月 丙寅條.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정부에 대한 민의 불신감은 깊게 배어 있었다. 이미 전쟁이 발발하였을 당시 왕을 비롯한 대신들은 피난가던 백성을 도성에 잡아다 놓고 도망하였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²⁾ 더우기 피난과정에서 관료들의 대부분은 父母妻子의 安慰를 내세워 도망하고 그 일부만이 왕과 함께 피난길에 나섰던 것이다.⁽¹³⁾ 도성의 주민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거나 지방민이 왕조정부를 전면 거부하는 상황까지 전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즉 일부 민은 倭軍의 앞잡이가 되어 왕조정부에 창을 거꾸로 들이대거나,⁽¹⁴⁾ 明兵으로 위장하여 조선의 통치체제를 거부하였으며,⁽¹⁵⁾ 심지어 조선의 왕자를 사로잡아 적에게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다.⁽¹⁶⁾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不事二君’의 지배논리를 부정한 것이다.

특히 전쟁 기간 倭軍의 침입에 쉽게 무너져 버린 조선왕조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전쟁이 끝나도 그치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뒤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농민이 농사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도망갈 제책만을 세우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당시 정부에서도 파악하고 있었다.⁽¹⁷⁾ 전쟁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경상도를 비롯한 재침 가능 지역뿐 아니라, 평안·함경도 등 북방지역에서도 일고 있었다. 또한 도성주민도 변방의 적의 동향 내지 군사정보가 속속들이 도착할 때마다 전쟁재발에 대한 의구심에 차서 동요하였다.⁽¹⁸⁾ 결국 전쟁이 일어나면 왕조정부의 군사력은 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민으로서는 도망갈 궁리를 하거나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대상에 기울고 있었던 것이다.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성리학 이외의 사상으로서의 경도현상도 이와같은 배경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전쟁 직후 ‘訛言’의 민간 유포 현상이 정부가 문제삼을 만큼 심화된 것도,⁽¹⁹⁾ 바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민간차원의 정보를 더 신뢰하려는 민의 처지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통치조직에 대한 민의 수용자세에서도 드러난다. 수령에 대한 불신감은 이 시대의 일반적 현상이고, 觀察使 및 體察使에 대한 멸시풍조도 정부가 문제삼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었다.⁽²⁰⁾ 통치조직에 대한 불신은 나아가 중앙정부의 권위에 대한 거부현상으로까지 확대 발전되었다. 이와같은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현상은 심지어 지방의 하급 관리 및 士族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중앙정부로 하여금 국가기강 재확립을 시급한 과제

(12) 〈壬辰錄〉《韓國古典文學全集》5, (世仁文化社, 1975), p.52

(13) 《宣祖實錄》宣祖 34年 2月 己卯條. ‘自上西幸之時 扈行臣僚若干人 而其時士族 名爲父母妻子 退伏草野’.

(14) 《宣祖實錄》宣祖 31年 12月 癸酉條. ‘南海人民 附賊交通 以爲嚮導 其中鄭育同 稱爲都將 鄭起生 稱爲勸農 行長回兵之時 領率人民 以酒肉迎拜’.

(15) 《宣祖實錄》宣祖 32年 2月 丙子條. ‘我國奸民 假爲天兵之形 作亂閭閻’.

(16) 臨海君과 順和君이 지방민에 의해 묶여져서 적에게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宣祖實錄》宣祖 36年 8月 己丑條 참조).

(17) 《宣祖實錄》宣祖 34年 4月 戊辰條

(18)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3月 乙酉條; 《宣祖實錄》34年 10月 乙酉條

(19) 《宣祖實錄》宣祖 36年 正月 丙戌條. ‘近來訛言胥動 輾轉流播 以致民心驚擾 極爲痛愕’.

(20) 《宣祖實錄》宣祖 34年 10月 己丑條. ‘今者 觀察體察 皆見蔑 則朝廷必從 而見輕矣’.

로 인식하게 하였다.⁽²¹⁾

국가기강의 붕괴현상은 왕실 권위에 대한 경시풍조로도 표출되었다. 왕실에 대한 불경스런 행위는 이제 관료들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관료들의 왕실에 대한 무례한 언사는 하나의 습관처럼 되고 있음이 관료 가운데서 지적되고 있었다.⁽²²⁾ 심지어 宣祖가 죽고난 뒤, 이른바 國喪 중인데도 別宮 근처 민가에서 唱歌가 임금 처소까지 들리고 있었다는 사실은⁽²³⁾ 당시 왕실의 권위가 상당히 실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위계질서의 붕괴상은 君臣 관계뿐 아니라, 士民 간에서도 표출되었다. 前安東府使가 大興에서 해를 당하고,⁽²⁴⁾ 중앙관료 柳熙緒가 살해된 사건은 물론, 특히 노비가 상전 즉 노비주를 살해하는 빈번한 사례는 이 시기 커다란 정치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다. 전쟁시 노비의 일부는 노비주 몰래 군대에 예속되거나,⁽²⁵⁾ 다른 노비주를 찾아 投屬하여⁽²⁶⁾ 이전 노비주와의 관계 단절을 피하였다. 또한 일부 노비는 身貢을 거부하고 수납차 내려온 노비주를 살해하거나,⁽²⁷⁾ 추쇄 행위에 맞서 노비주를 살해함으로써 상전 즉 노비주와 노비의 지배질서를 거부하였다.

이와같은 성리학적 위계질서의 동요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방안의 하나로 당시 주로 이념부분을 담당하였던 관료 李廷龜는 학교 교육을 강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²⁸⁾ 즉 그는 지배질서 회복을 위하여 일차 士族을 대상으로 통치이념을 보급 훈련시켜, 이들 성리학으로 무장된 士族들이 피지배계급을 성리학적 질서로 묶어내고 규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학교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학교 그 자체를 부정하는 데 까지 이르르고 있었다.

정부는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鄉校의 復設과 成均館의 重建을 추진함으로써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다시 보급시키려 하였다. 그런데 각 지방에 復設된 鄉校에 대한 거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경상도 義城의 향교를 부순 사건이 그것이다. “位版이 亡失되거나 床 아래에 거꾸로 팽개쳐 있었고, 심지어 跗板은 문 밖에 내던져져 있었다”⁽²⁹⁾는 것이 사건 직후 현장의 모습이었다. 이와같이 왕조정부로 보아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정부는 법인을

(21) 《宣祖實錄》宣祖 34年 10月 己丑條. ‘(敬差官)以量田事 時在其處 方欲打量 而委官書員及百姓之欺隱結卜者 盡皆逃散’.

(22) 《宣祖實錄》宣祖 32年 5月 癸酉條. ‘近來人心極惡 犯上不道之言 略無所忌 至於有識之人 亦未色此習 極爲寒心’.

(23)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3月 丁未條

(24) 《宣祖實錄》宣祖 36年 8月 丙午條

(25) 《宣祖實錄》宣祖 36年 10月 庚子條

(26) 《宣祖實錄》宣祖 36年 9月 壬午條

(27) 《宣祖實錄》宣祖 34年 9月 甲子條

(28) 《宣祖實錄》宣祖 34年 9月 庚子條. ‘亂後學校廢弛 倫紀不明 歐兄歐父 口不可道之惡行 閭閻間比比有之 而恬不爲怪 此由教導之不明而然 如小學等書 不可不頒布中外 使人知尊兄敬長之義也’.

(29) 《宣祖實錄》宣祖 39年 6月 辛丑條

찾아내지도 못하고 位版을 서둘러 개조하거나 다시 정리해 놓는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데 그쳤다.

교육기관의 권위를 무시한 사건은 중앙에서도 발생하였다. 전후 성균관의 증건작업의 일 단계로서 聖廟 明倫殿 西齋가 완공된 직후 이른바 ‘壁書’ 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왕조의 최고의 교육기관이요 정신적 상징물인 성균관의 聖廟에 壁書를 한 것이다. 壁書에는 朝紳 및 宮人 內官의 이름이 열거되고 그들에 대한 인물평이 무려 천 백 여 자가 聖廟 東廡後壁에 가득하였다.⁽³⁰⁾ 이 사건 역시 정부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글자를 아는 儒生 정도로 파악하였다. 실제 성균관 儒生의 소행으로 추적되는 이 사건은 지배계급 내에서 그것도 예비관료가 학교의 권위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즉 이 시기의 위기적 상황이 단순히 지배와 피지배 간의 모순이 폭발하는 형태에 그치지 않고, 지배계급 내의 모순을 촉발할만큼 지배 피지배의 모순이 심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왕조정부를 부정하는 인식, 그리고 통치기구 및 통치질서에 대한 거부감은 때로는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일부 피지배계급은 왕조정부의 안집책을 거부하고 流民으로 떠돌아 다니거나 무리를 지어 盜賊活動을 전개하기도 하고⁽³¹⁾, 심지어 대규모의 항쟁⁽³²⁾을 계획 거사하는 극한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

한편 정부로서는 통치이념의 붕괴상을 통해서도 당시의 위기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쟁 뒤에 도성 주민 가운데 죽은 자가 한없이 많았으니, 남은 백성의 절반이 素服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성안에 들어오는 날에 이르러서 도성 주민이 거리에 가득찬 것을 보았으나 喪服을 입은 자가 없으니, 이는 반드시 난리 후에 倫紀가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므로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아니하다.⁽³³⁾

위 기록은 서울에 환도한 직후 宣祖가 도성 주민이 喪禮 즉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낸 글이다. 실제 전쟁 기간에 喪禮를 준수한다는 것은 지배계급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물며 생존에 대한 위협 속에서 왕조정부를 불신하고 있던 피지배계급으로서는 지배계급의 논리에 충실하여 喪禮를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특히

(30) 《宣祖實錄》宣祖 36年 12月 乙未條

(31) 壬辰倭亂 이후 盜賊活動은 주로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평소 농업에 종사하였으나 과중한 조세부담 혹은 토지상실 등으로 열악화되었으며, 특히 흉년이 든 해에는 정부의 효율적 조치가 미치지 않아 盜賊活動을 통하여 통치체계에 저항하였다(《宣祖實錄》宣祖 40年 11月 己亥條 참조).

(32) 이 시기 발생한 叛亂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01년(宣祖 34) 7월에 사전 적발된 濟州 및 南海沿岸 地域 叛亂(「吉云節·蘇德裕의 亂」), 1602년(宣祖 35) 겨울부터 이듬해 5월에 이르기 까지 天安·木川·全義 등 忠淸道 일대에서 전개된 叛亂, 1612년(光海君 4) 2월 黃海·京畿 일대에서 모의된 叛亂 및 1613년(光海君 5) 4월에 사전 적발된 이른바 「七人庶子逆獄」 등.

(33) 《增補文獻備考》卷 84 禮考 31 禮俗 “喪亂之後 都民之死者 何限 意其遺民過半縞素 及入城之日 見都民填塞而未有服喪者 此必亂後 倫紀墮廢 而然 所關非輕”

전쟁이 발발하자 임금을 버리고 도망간 관료가 적지 않은 실정에서⁽³⁴⁾ 지배계급 자체도 喪禮에 충실하지 않았던 점은 쉽게 납득되어 진다.

그 사례를 대체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고 있다. 즉 피난시 부모를 버리고 도망갔다거나,⁽³⁵⁾ 喪服을 입지 않았다거나,⁽³⁶⁾ 혹은 喪中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금기사항인 술과 고기 그리고 여자를 가까이했다⁽³⁷⁾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이와같이 지배계급 자체도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제대로 준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차 大臣만이라도 禮葬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³⁸⁾ 이후 지방민도 喪禮를 준수토록 하기 위하여 우선 관료 가운데 위반자는 처벌하고, 지방민 가운데 喪禮를 제대로 지킨 경우는 뽑아내어 상을 주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한편 전쟁 기간 婦女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였다. 이른바 ‘節義’를 상실하고 목숨만을 건진 수많은 婦女는 물론 확인되지 않지만, 倭軍의 위협을 거부하고 목숨을 끊은 婦女의 사례는 수없이 확인할 수 있다.⁽³⁹⁾ 게다가 전쟁시 파견된 明兵이 자행한 조선 婦女의 겁탈 행위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婦女의 피해는 婦女 자신이 아니라, 조선 왕조정부가 外勢로부터 민을 보호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전란 직후 婦女의 ‘貞節’을 강조함으로써 그 책임소재를 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었다. 이른바 ‘失行者’를 적발하여 三省推鞠을 가하고, 결국 죽음에 몰아넣고 말았다.⁽⁴¹⁾ 倭軍이나 明兵과 같은 외부요인 이전에, 내적으로 士族들이 處子를 겁탈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용인되면서⁽⁴²⁾ 피지배계급 내의 그 행위는 綱常罪로 규정하여 극형에 처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임진왜란 직후 조선왕조정부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그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여 피지배계급에 강요해 왔던 왕조정부는 종전 후 왕조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된 상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지배계급 자체 나아가 왕조정부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후 민심수습을 통한 통치체계의 안정책의 하나로서 성리학적 사회윤리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도출해 내었던 것이다.

(34) 《宣祖實錄》宣祖 34年 2月 己卯條

(35) 《宣祖實錄》宣祖 33年 11月 丁巳條

(36) 《宣祖實錄》宣祖 31年 12月 戊辰條

(37) 《宣祖實錄》宣祖 32年 9月 丁巳條

(38) 《宣祖實錄》宣祖 31年 12月 丁巳條

(39) 《東國新續三綱行實》에 烈女로 선정된 사유가 거의 倭軍의 겁탈 위협에 맞서 저항한 婦女의 節義 때문이다.

(40) <壬辰錄> 《韓國古典文學全集》5, (世仁文化社, 1975), p. 167

(41) 《宣祖實錄》宣祖 34年 11月 壬寅條

(42) 《宣祖實錄》宣祖 33年 12月 辛未條

Ⅱ. 治安強化와 褒獎策의 施行

종전 후 조선왕조정부는 민의 불신감을 불식하고 통치체계를 강화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통치질서에 맞서거나 위배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계급 자체의 단속을 보이고 그 뒤 민에 대한 통제의 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논리가 내재되어 있었다.

가장 시급하게 제기된 사안은 전쟁시 敗將 혹은 投降者를 처벌함으로써 자체 단속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예컨대 白士彝은 黃石城將으로 성을 지키다가 성이 함락되자, 성내에 가득한 士民을 모두 죽게하고 그의 가족과 일부 부하만을 데리고 도망하였다는 혐의로 처벌되었으며,⁽⁴³⁾ 또한 金睟도 성을 버리고 도망가 숨었다는 혐의로 처벌되었다.⁽⁴⁴⁾ 그리고 적에 투항한 관료들은 자신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관료에 임용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⁴⁵⁾

자신의 가족의 安慰에만 급급한 관료는 물론, 적에 투항하여 「不事二君」의 綱常을 어긴 죄를 범한 관료조차 있었던 전시 상황은 종전 후 왕실에 대한 無禮 행위로 이어졌다. 정부는 왕실에 대하여 언사가 불손한 관료를 削去仕版하거나,⁽⁴⁶⁾ 國喪 중 금기사항을 어긴 관료를 罷職不叙하는 등⁽⁴⁷⁾의 조치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家禮 특히 喪禮를 준수하지 않은 관료에 대한 처벌도 가해졌다.⁽⁴⁸⁾ 그런데 이들 관료에 대한 처벌의 강도는 고작 罷職不叙 정도가 일반적이었으며, 심지어 그것도 관철되지 않은 채 다시 관료에 복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⁴⁹⁾ 피지배계급에 대해서는 綱常罪를 적용하여 극형으로까지 몰아넣는 경우가 허다한 데 반해, 지배계급에 대한 처벌은 형식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다.

어쨌든 ‘先士大夫 단속 後民 단속’의 논리는 다른 부면에도 적용되어 나타났다. 말하자면 우선 士大夫의 不忠 不孝에 대한 단속과 함께 지배계급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노력도 시도되었다. 관료들의 사치한 풍속을 단속하고⁽⁵⁰⁾ 아울러 관료의 服色 정비도 추진하였다.⁽⁵¹⁾

(43) 《宣祖實錄》宣祖 31年 12月 庚午條

(44) 《宣祖實錄》宣祖 31年 12月 戊辰條

(45) 《宣祖實錄》宣祖 38年 7月 甲戌條

(46) 《宣祖實錄》宣祖 32年 5月 癸酉條

(47)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8月 辛亥條

(48) 《宣祖實錄》宣祖 32年 9月 丁巳條

(49) 이 시기 罷職不叙의 처벌을 받은 관료로서 재기용되는 관료들로는 일단 金睟·許筠·郭再祐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儒教 倫理를 어겼다는 죄명으로 처벌되었다가, 뚜렷한 사유없이 복직되는 관원은 적지 않다.

(50)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4月 乙卯條

(51) 宣祖末 이래 光海君 즉위년, 원년에 걸쳐 官人의 服色 정비가 추진되었다. 그 내용은 기존의 관례에다 明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비키로 하였다.

한편 통치이념에 위배된 사상에 경도한 관료들에 대해서도 단속하였다. 許筠은 “儒家の子孫으로 그 父兄에 反하여 하는 바가 佛敎를 崇信하고 佛經을 誦讀하며, 평소 僧服을 입고 佛敎를 받들다가, 수령시 齋室을 만들고 僧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고 罷職不叙되었다.⁽⁵²⁾ 또한 새로 及第한 卞獻도 佛敎에 投身한 적이 있다고 하여 削去仕版되었다.⁽⁵³⁾ 이밖에 郭再祐는 道流에 심취하여 道術로 민을 미혹케 한다는 혐의를 받아 罷職不叙되었다.⁽⁵⁴⁾

이와같은 사상통제는 피지배계급을 겨냥한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임진왜란 직후 민간에서 다른 사상에로의 경도현상이 확산되어 유교이념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부각된 승려에 대해 견제하고,⁽⁵⁵⁾ 민간의 불교로의 경도현상을 억지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居士’와 ‘社堂’이라고 불리는 남·녀의 민간불교 전파자가 많이 포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⁶⁾ 그래서 정부는 우선 궁궐 근처에 집을 짓고 들어와 있는 불교도들을 성밖으로 내쫓고, 京·외의 ‘居士’ ‘社堂’에 대해서는 소재 州縣에서 잡아다 조사하고 더욱 심한 자는 적발하여 처벌하기로 하였다.⁽⁵⁷⁾ 여자의 경우 家業이 조금 실한 자는 北邊의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 강제로 묶어주고, 年少하고 부릴만한 자는 官奴婢에 定屬시키기로 하였다.⁽⁵⁸⁾ 또한 ‘妖言’으로 민을 미혹케 하는 자는 自服시켜 刑典을 가하도록 하였다.⁽⁵⁹⁾ 특히 北方의 군사적 동향이 심상치 않게 보고되면 都城의 民心은 의구심에 가득차게 되고, 이에 정부는 民心을 동요케 하는 ‘妖言’을 퍼뜨린 자를 적발하여 효수형에 처해서라도 막아보고자 하였다.⁽⁶⁰⁾

실제 ‘濟世’를 일컫는 반란이 준비되다가 사전에 적발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1612년(光海君 4) 2월 황해도·경기도 일대에서 僧侶·私奴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민이 가담한 반란이 계획되었다.⁽⁶¹⁾ 물론 이들 중 체포된 자는 이른바 ‘謀叛罪’에 적용되어 三省推鞠하에 어김없이 死刑에 처해졌다.⁽⁶²⁾

治安 強化 작업은 號牌法을 제시행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나타났다. 이시기 號牌法 시행의 표면적 이유는 兵力을 재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선전되었다.⁽⁶³⁾ 그러나 號牌法의 또 다른 기능은 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던 것이다.⁽⁶⁴⁾

(52) 《宣祖實錄》宣祖 40年 5月 丙寅條. “三陟府使許筠 以儒家之子 反其父兄 所爲崇信佛敎 誦讀佛經 平居緇衣拜佛 爲守令時 設齋飯僧”.

(53)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10月 乙未條

(54) 《宣祖實錄》宣祖 40年 5月 丙寅條

(55) 《宣祖實錄》宣祖 33年 正月 壬申條

(56) 《宣祖實錄》宣祖 40年 5月 丙寅條

(57) 위와 같음

(58) 위와 같음

(59) 위와 같음

(60)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3月 乙酉條

(61) 《光海君日記》光海君 4年 2月 癸未條

(62) 《宣祖實錄》宣祖 35年 11月 庚寅條. ‘凡三省推鞠 爲謀反叛逆及係干綱常之罪而設’.

(63)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12月 丙申條

(64) 위와 같음

號牌法 부활은 전쟁이 어느 정도 종결된 1598년(宣祖 31) 8월에 처음 제기되었으나⁽⁶⁵⁾, 1612년(光海君 4) 3월에 와서야 시행될 수 있었다.⁽⁶⁶⁾ 號牌法 시행이 지연된 이유는 다음의 기록에서 찾아낼 수 있다.

士庶는 마음이 허둥지둥하여 보전하지 못할 것처럼 되었고, 무지한 小民은 간혹 산중에 도피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차지 않으려 한다. 人心이 이에 이르렀으니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정처없이 떠다니는 僧人들은 모두 逃役人인데, 이들의 이름을 추적·단속하여 각기 호패를 차게 한다면 이들은 먼저 원한의 마음을 풀을 것이다.⁽⁶⁷⁾

그리고 당시 市井小民들도 號牌를 착용하지 않기 위하여 宮禁과 내통하여 革罷할 것을 도모하였다.⁽⁶⁸⁾ 국왕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체면상 강행해야 한다는 大臣의 논의에 따라 결국 號牌法은 시행되었으나,⁽⁶⁹⁾ 불과 4개월만에 停罷되고 말았다.⁽⁷⁰⁾ 말하자면 임진왜란 이후 실추된 국가 권위에 대한 민의 불신과 저항의 실상을 號牌法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왕조정부로서는 직접적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통제 즉 신분질서 혹은 유교이념의 보급에 의한 통치체제의 정비에 주력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통제에 앞서 民心을 수습하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였다.

종전 직후 민심 수습 작업은 농민의 생존조건 회복에 초점이 두어졌다. 즉 民生을 보호하지 못하는 수령의 처벌과 경제제도의 개선 등이 민심 수습의 주된 내용이었다.

수령은 지방민의 勸農과 收稅 그리고 風俗의 規檢을 담당하는 ‘百姓之父母’로서 그 기능을 완수해야 것으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愛民如子’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민의 저항과 동요를 야기한 수령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내적 논리는 왕조정부가 설정한 논리이다. 그런데 전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이완된 상황은 지방관의 貪虐 행위를 조장하였다.⁽⁷¹⁾ 더우기 전후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자원의 동원체제는 民生을 피폐케 하는 근본적 원인의 하나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령에게 그 일차적 책임을 지워 처벌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民心을 수습하고자 하였다.⁽⁷²⁾

그리고 정책차원에서 농민의 생산조건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려는 조치가 강구되었다. 말

(65) 《宣祖實錄》宣祖 31年 8月 乙丑條

(66) 《光海君日記》光海君 3年 12月 丙寅條

(67)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11월 癸丑條. “士庶遑遑 若不可保者 無知小民 間有逃避山中 寧死不欲 佩持 人心至此 何事可爲 至於僧人 雲浮無定 皆是逃役之人 逐名團束 各令佩持 此輩先懷怨恨之心”

(68)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11月 癸丑條. “時市井之民 不欲佩圓木牌 交通宮禁 百計圖罷”

(69) 《光海君日記》光海君 3年 正月 辛亥條

(70) 《光海君日記》光海君 4年 7月 甲辰條

(71) 《宣祖實錄》宣祖 32年 3月 庚寅, 辛卯條 참조

(72) 수령에 대한 통제 방식은 대간의 탄핵과 御使 파견을 통한 탐문조사의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1600년(宣祖 33) 2월에는 각도의 군현에 御使를 일시에 파견할 만큼 수령통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宣祖實錄》宣祖 33年 2月 丁酉條).

하자면 租稅의 減免 조치⁽⁷³⁾나 量田의 실시⁽⁷⁴⁾ 그리고 大同法의 시행⁽⁷⁵⁾ 등이 그것이다.

왕조정부는 민의 생존조건을 개선함으로써 민심 수습을 꾀하려는 노력과 함께, 통치이념에 충실한 민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褒獎하는 방법도 택하였다. 이른바 褒獎策은 전쟁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임과 동시에, 그를 통해 무너진 통치이념을 회복한다는 이중의 목적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褒獎策에는 전쟁 중 倭軍으로부터 민을 보호하지 못함으로써 실추된 국가의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기 褒獎策이 제기된 것은 宣祖가 환도한 직후이고 전쟁 기간에도 시행되어 왔지만,⁽⁷⁶⁾ 특히 전쟁이 종결되면서부터 활발히 추진되었다. 종전 후 정부는 教化政策의 하나로써 褒獎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전시의 忠臣·孝子·烈女에 해당되는 사례를 꾸준히 발굴하여 왔다.

대체적으로 褒獎 작업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그 지방 士族이 지방관에게 善行 사례를 上申하면 지방관이 이를 접수하여 觀察使에 보고 하고, 觀察使는 禮曹에 實績을 올리고 褒賞을 의뢰한다. 禮曹는 列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혹은 旌表하고 혹은 賞職하고 혹은 復戶하며 賞物은 그 高下에 따라 선별하여 議政府에 보고하면, 議政府는 이를 다시 검토하여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짓는 형식이었다.⁽⁷⁷⁾

먼저 ‘忠臣’으로 선별된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 기간 유공자였음에도 기왕의 褒獎에서 누락된 義兵將과 그 지역 지방관으로서 戰死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⁷⁸⁾ 물론 이들은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지만, 국가로서는 그들의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지방민의 충성심을 견인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忠臣’ 선정은 그 지방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방사족의 입지점을 강화시켜준다는 동시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 지역 출신의 ‘忠臣’ 선정은, 전쟁 발발 후 형해화된 지배계급의 역할에 대한 민의 불신과 저항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을 국가로부터 확인받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孝子’로 선별된 사유는 거의 喪禮에 충실했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전쟁기간 喪禮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음은 이미 살펴 본 바 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어도 喪禮를 소홀히 하는 풍조가 그치지 않자, 정부는 孝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통치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정부는 不孝 사례를 적발 처벌하는 한편, ‘孝子’ 사례를 적극 발굴 포장하였던 것이다. 또한 宣祖가 죽은 뒤 國喪을 父親喪의 예에 따라 3年喪을 치른 자를 적극 선

(73) 《宣祖實錄》宣祖 33年 11月 丁卯條

(74) 이 시기 量田은 1603년(宣祖 36)~1604년, 1613년(光海君 5)등 2차에 걸쳐 三南地方을 제외한 5道에 시행되었다. 大同法의 시행도 바로 量田의 결과 가능하였던 것이다.

(75) 《光海君日記》光海君 即位年 5月 壬辰條

(76) 《增補文獻備考》卷 84 禮考 31 禮俗

(77)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10月 戊辰條

(78) 《宣祖實錄》光海君 37年 正月 甲戌條；5月 庚午條

전함으로써, ⁽⁷⁹⁾ 국가의 권위 회복과 민의 통제에 이용한 경우도 드러나고 있다.

‘烈女’로 선별된 사유는 대부분 倭軍의 침해로부터 貞節을 지켰다는 내용이다. 실제 이들 婦女의 죽음은 倭軍이 아닌 왕조정부가 책임지어야 할 것이지만, 정부는 단지 旌表로서 그 책임을 상쇄하였다. 죽은 婦女는 旌表라도 되었지만, 죽지 못한 婦女는 피해를 입어서도 貞節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론 보상의 대상에는 포함될 수 없었다.

이밖에 先賢·死節人·清白吏 子孫 및 儒學이나 孝行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관리로 임용하는 조치도 통치이념의 보급을 위하여 채택되었다. ⁽⁸⁰⁾

그런데 여기서 忠臣·孝子·烈女에 대한 褒獎策의 실제적 기능에 대하여 재검토해 보자. 褒獎策의 시행이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개별적 민과의 확인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연히 지방사족 즉 그 지방 지배계급의 입지점을 강화시켜 주는 점이 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褒獎에 대한 결과물은 국가로부터 개별적 민이 받는다 하여도, 유교 윤리의 강조라는 결과물은 직접적으로 그 지방사족과 피지배계급의 지배질서를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Ⅲ. 學校教育 強化와 統治理念 普及

지금까지 조선왕조정부의 체제정비 과정을 治安行政과 內務行政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는 왕조정부가 教育行政을 통하여 실시한 통치 이데올로기의 보급과 강화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Ⅲ장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기 위하여 서로이 편찬 혹은 재간행한 서적의 실태와 이데올로기 강화의 담당 기구로서 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새로운 서적의 편찬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자. 종전 후 褒獎策을 적극 시행하고 있었던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는 단순히 忠臣·孝子·烈女를 발굴하여 개별적으로 포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사례를 圖書化하여 지방에 유포시키고자 하였다.

光海君은 즉위하자마자 宣祖代 따무리하지 못한 圖書 纂集 작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宣祖代에 節行人 事蹟을 禮曹에서 弘文館에 移送하여 纂集케 하였는데, 光海君은 재차 纂集 정도를 확인하고 서둘러 纂集을 마쳐 圖書제작에 착수할 것을 하달하였다. ⁽⁸¹⁾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 각도에서 보고한 인원이 무려 수 백명으로 인수가 많고 行蹟 또한 각종된 것이 많이 나와 이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과정에서 작업이 지체되고 있었다. ⁽⁸²⁾

(79)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3月 辛卯條

(80) 《宣祖實錄》宣祖 33年 11月 乙丑條. ‘廣選先賢死節人清白吏子孫及儒術孝行之表表在人耳目者爲先收用以清仕路’.

(81)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10月 戊辰條

(82) 위와 같음

그런데 1612년(光海君 4) 황해·경기도 일대에서 ‘濟世’를 일컫는 무리들의 반란조집이 파악되자, 光海君은 다시 忠臣·孝子·烈女 등을 기록한 서적의 조속한 반포를 촉구하였다.⁽⁸³⁾ 마감 작업은 이듬 해 12월 종결되고 이제는 纂集廳을 설치하여 간행하는 작업만이 남게 되었다.⁽⁸⁴⁾ 간행 작업은 1618년(光海君 6) 纂集廳 설치 이후 상당한 物力을 동원하여 3년만에 완성되었다.⁽⁸⁵⁾ 이 책이 바로 《東國新續三綱行實》이며, 그 총권수는 18권에 이르러, 조선왕조 역대 三綱行實 관계 서적 가운데 가장 방대한 분량에 해당된다. 이때 印出된 권 수는 총 900권으로, 公洪道(忠淸) 200권, 平安道 50권, 黃延道(黃海) 150권, 慶尙道 200권, 全羅道 300권씩 반출되었다.⁽⁸⁶⁾

그런데 이 책이 그림과 함께 漢文 그리고 諺文이 并記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諺文并記 혹은 諺解本 서적 보급은 이미 15·16세기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諺文并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으며, 실제 그것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겠다.

종래 諺文 즉 한글본 간행이 국왕 혹은 국가가 漢字에 익숙하지 않은 민에게 효율적인 교화수단으로 기능하였다는 견해가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三綱行實圖 보급이 바로 국왕 혹은 국가의 권위 및 통치이념을 직접적으로 침투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하였다.⁽⁸⁷⁾

이에 대해 조금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15·16세기 諺文本 혹은 諺文의 기능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던가에 대해 알아 보자.

A1. 三綱行實을 諺文으로 번역하여, 京·外 士族의 家長과 父老 혹은 教授·訓導 등으로 하여금 婦女·小子를 가르쳐서 깨우치도록 하라.⁽⁸⁸⁾

A2. 婦女에 이르러, 또한 親屬이 이를 가르쳐서 밝게 깨우쳐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유념하도록 하라.⁽⁸⁹⁾

즉 정부는 婦女와 兒童에게서 직접적 효과를 기대하고 諺解本을 간행하였다. 그런데 조선왕조정부가 간행한 諺解本이란 小學·三綱行實·呂氏鄉約 등 통치 이데올로기 보급 서적에 국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공식 기록은 漢文이 원칙이며 간혹 吏讀가 허용될 뿐이었다. 게다가 諺文을 보급하는 교육기구가 따로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經國大典》에 규정되어 있는 士族의 家長, 父老 그리고 教授·訓導 등이 三綱行實에 漢文과 함께 并記된 諺文 내용을 婦女·小子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83) 《光海君日記》光海君 4年 5月 辛酉條

(84) 《光海君日記》光海君 5年 12月 乙未條

(85) 《光海君日記》(太白山本) 光海君 9年 3月 11日(丙子)條

(86) 위와 같음

(87) 平木實, 앞의 논문, pp. 295-300

(88) 《經國大典》禮典 獎勸條. “三綱行實 翻以諺文 令京外士族家長父老或其教授訓導等 教誨婦女小子使之曉解”.

(89) 《世宗實錄》世宗 16年 5月 甲戌條. “至於婦女 亦令親屬諄教之 使曉然共知 口誦心惟”.

수 있는가. 士族의 家長 혹은 父老에 의한 教誨는 비강제적 규정이며, 鄉校에 소속된 教授·訓導 등은 鄉校生徒에 한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더우기 婦女 및 小子는 鄉校生이 될 수 없는 대상이었다.⁽⁹⁰⁾ 또한 서적의 배포 권 수가 고작 각 郡·縣 鄉校에 3권 내외에 불과하였던 점을 감안하면,⁽⁹¹⁾ 그 서적에 접할 수 있는 대상은 매우 한정되는 것이다. 설령 里·洞마다 輪讀케 하였더라도 이미 諺文을 습득한 士族의 婦女와 兒童에 한해서 그 직접적 효력이 발휘되었을 것이다. 더우기 이 시기 농민의 일반적 존재 양태가 佃戶的 존재였다고 한다면, 그들이 한글 습득을 통해 文字 해독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諺文并記本이 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제적 대상이 일반 백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士族의 婦女와 兒童이라 하더라도 그 일부만이 접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제한된 권 수의 三綱行實의 간행 효과는 통치 이데올로기를 미화하고 선전하는 상징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있다.

三綱行實과 함께 《小學》의 보급도 재추진되었다.⁽⁹²⁾ 당시 정부는 통치 이데올로기의 기본 교재로서 三綱行實 및 小學의 보급을 중시하고, 나아가 四書三經과 心經, 近思錄 등을 상급 교재로 선정하여 통치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⁹³⁾

이와 같이 선정된 교재는 교육기구를 통하여 보급되었다. 이 시기 통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기초적 교육기구는 서울의 四學과 지방의 鄉校였다. 그래서 정부는 서울의 四學 재건과 지방의 鄉校 復設에 많은 기대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의 四學을 재건하는 데도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시일이 오래 걸렸으며, 지방의 鄉校는 결국 지방사족에 의하여 復設 또는 重建 작업이 추진되었다.

어쨌든 學校教育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당시 정부가 절감한 문제였음에 틀림없다.

정치의 근본은 士子를 교양하는 일 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난리 이후 학교 제도가 퇴폐한 지 이미 오래여서, 幼學의 선비들은 소속된 바가 없고(이로 인해) 風習이 투박해짐이 날로 심하니 有識者가 염려하는 바가 매우 크다.⁽⁹⁴⁾

정부는 학교 제도의 강화를 중요시하고 成均館을 重建함과 동시에 四學을 재건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서울의 四學 가운데 우선 一學을 세우고 幼學 중 小學入格者만 이에 소속케 하고 지방의 幼學은 鄉校에 소속케 하였다.⁽⁹⁵⁾ 일시에 四學을 復設하지 못하는 어려움

(90) 金龍德, 〈朝鮮後期 鄉校研究——湖南을 中心으로——〉, 《韓國制度史研究》(一潮閣, 1983).

(91) 《東國新續三綱行實》의 전체 간행권수가 900권인데, 당시 군현수에 비추어 보면 군현당 3권내외가 배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92) 《宣祖實錄》宣祖 39年 6月 丙午條

(93)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11月 乙酉條

(94) 《宣祖實錄》宣祖 33年 11月 乙丑條. “爲政之本 莫先於教養士子 而亂離以後 學校之制 頽廢已久 幼學之士無所係屬 風習之偷薄 日甚一日 有識之寒心 極矣”.

(95) 《宣祖實錄》宣祖 33年 12月 辛未條. “四學并爲設立 此時則難矣 而京中建立一學 幼學則皆屬於學 ……外方幼學 并屬於鄉校”.

은 전후 제반 통치기구를 정비하는 데 따른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선 一學을 세우고 다시 一學을 증설하여 四學 가운데 中學·西學을 復設하였다.⁽⁹⁶⁾ 또한 成均館은 1606년(宣祖 39) 4월 聖廟·明倫堂·西齋를 완공함으로써,⁽⁹⁷⁾ 국가 최고의 교육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반면에 鄉校의 復設 작업은 지방사족의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른바 ‘人倫’을 밝히기 위하여 학교의 설치는 시급하다는 표면적 논리를 내세워,⁽⁹⁸⁾ 지방에서의 士族의 지위를 강화시켜 보자는 노력이 鄉校의 復設로 표현된 것이다. 이미 II장에서 보았듯이 유교윤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통치이념을 보급·강화시키는 기능과 함께, 지방사족의 그 지역에서의 입지점을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었던 것이다. 즉 지방사족이 주도하여 鄉校復設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아가서 私財를 동원하여 鄉校 시설을 마련하고 있다⁽⁹⁹⁾는 것은 그 지방사족의 지배계급으로서의 위치 강화 노력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가로서는 일차 그 지방사족을 대상으로 통치이념 교육을 鄉校와 書院을 중심으로 실현시키고, 이념교육을 완수한 士族은 다시 일반 피지배계급의 사고와 행위를 통제하는 형태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려 했던 것이다. 즉 국가가 통치 이데올로기를 교육하는 직접적 대상은 일반 피지배계급이 아닌 지방사족이었다. 다시말해 임진왜란 직후 즉 17세기초의 통치체제는 국가—민의 구조라기 보다 국가—사족—민(피지배계급)의 구조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보충적 증거의 하나로서 祠宇의 건립을 들 수 있다. 祠宇 건립은 이미 임진왜란 이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일단 전쟁 직후 건립 추진된 祠宇를 주대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전쟁 직후 祠宇의 건립 주체도 역시 지방사족이다. 이들은 주로 그 지역과 연고가 있는, 또는 혈연관계에 있는 義兵將 혹은 儒學者를 내세워 ‘忠臣’ 또는 뛰어난 ‘儒家’임을 公認 받고 아울러 祠宇 혹은 書院의 賜額을 요청한다.

이 시기 즉 임진왜란 종전 직후 건립된 祠宇 가운데 賜額된 즉 국가로부터 公認된 것만 해도 表忠祠(趙憲), 褒忠祠(高敬命), 旌烈祠(金千鎰)⁽¹⁰⁰⁾ 등과 崇賢祠(金淨·鄭光弼·宋麟壽)⁽¹⁰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와같은 祠宇의 건립 비용은 그 지역 사족이 중심이 되어 마련하고 있다. 즉 지방사족은 祠宇 건립을 제기하고, 또 국가의 지원이 거의없이 재정적 부담을 전담하였다.⁽¹⁰²⁾

(96)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7月 戊辰條

(97) 《宣祖實錄》宣祖 39年 4月 丁未條

(98) 《宣祖實錄》宣祖 38年 正月 辛丑條. ‘學校之設 乃所以明人倫也’.

(99) 《宣祖實錄》宣祖 34年 6月 己卯條

(100)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3月 甲辰條

(101) 《光海君日記》光海君 元年 3月 丁酉條

(102) 《宣祖實錄》宣祖 34年 7月 戊午條

祠宇 건립의 목적은 전쟁으로 인하여 실추된 지배계급의 입장을 강화하려는, 더 구체적으로는 지방사족이 그 지역내의 지배질서를 다시 묶어내려 한 데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사족들은 朝鮮思想史의 系譜를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추진하였다. 즉 자신들이 무장한 性理學의 계통성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지배계급임을 재확인받고, 또 한편으로는 국가로부터 公認된 이념의 체득자로서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력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五賢從祀’의 논의가 그것이다. 즉 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彥迪·李滉 등 5賢을 文廟에 從祀케 함으로써 儒學을 부흥시키자는 것이 사족 즉 지배계급의 논리이다. 이를 학교 제도와 구분하여 설명하면, 학교는 人倫을 밝히기 위하여 있어야 하고, 從享은 德을 기리기 위해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³⁾ 바꿔말해 학교를 통해서만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從享을 통해 지배계급의 우월성을 확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같은 ‘五賢從祀’의 논의가 그 대상의 적합여부를 둘러싸고 약간의 견해차가 표출되어 시일이 지연되었지만,⁽¹⁰⁴⁾ 마침내 1610년(光海君 2) 7월 公認되었다.⁽¹⁰⁵⁾ 이후 李珥,⁽¹⁰⁶⁾ 徐敬德,⁽¹⁰⁷⁾ 曹植⁽¹⁰⁸⁾ 등을 文廟에 從祀시키자는 논의가 계속됨으로써, 지배계급 전체의 미화 작업으로부터 점차 특정 學派 또는 일정 지역의 지배계급의 구체적 입장강화로 발전되었다.⁽¹⁰⁹⁾

맺 음 말

지금까지 임진왜란 직후 정부의 이데올로기 정책을 중심으로 통치체제의 정비 과정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도출해낸 사실을 다시 정리함으로써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왕조정부는 임진왜란 직후 민중 동요의 기본적 원인의 하나가 통치이념의 보급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우선 치안행정의 강화를 통하여 성리학적 지배질서에 위반된 사례를 적발하여 강력히 대응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지배질서에 충실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선전함으로써 민에 대한 왕조정부의 권위를 확인해내고자 하였다.

(103) 《宣祖實錄》宣祖 38年 正月 庚子條. ‘學校所以明倫 從享所以崇德 明倫之道 必推其所自出 崇德之典 莫大乎從公論也’.

(104) 5賢 선정의 적부여부에 대한 논의가 일었으며, 특히 李彥迪에 대한 是非가 집중 거론되었다.

(105)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7月 己未條

(106)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10月 甲戌條

(107) 《光海君日記》光海君 2年 10月 乙亥條

(108) 《光海君日記》光海君 7年 9月 壬午條

(109) 光海君代 後年 즉 大北政權의 後半에 鄭仁弘 등이 曹植을 조선 성리학의 정통 후계자로 확정하려는 작업이 그것이며, 이후 禮論, 湖洛論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상투쟁도 바로 지배계급 일반이 아닌 특정 지배계급의 입장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특히, 1623년 仁祖 反正 이후 특정 지배계급 중심의 政局 운영과 사상 통제 현상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왕조정부는 忠臣·孝子·烈女 등의 사례를 圖書로 출판하여 이를 보급함으로써, 교육 행정을 통한 유교 윤리의 강화에 주력하였다.

그 기초 교재는 小學과 三綱行實圖이었으며, 이의 보급은 지방사족이 주도하여 復設한 鄉校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鄉校復設 논의가 중앙정부에서도 진행되었지만, 실제 각 지방의 鄉校復設을 추진한 주체는 정부가 아닌 그 지방사족이었던 것이다.

왕조정부가 강조하는 유교 윤리도 직접 일반 피지배계급에 침투되기 보다는 일차 사족을 대상으로 보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性理學으로 무장된 이들 지방사족이 일반 피지배계급에게 성리학적 이념질서를 강제하는 형태로 教化政策이 파급되었던 것이다. 그 밖에 祠宇도 지방사족이 주체가 되어 발의 건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족들은 그 지방의 지배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당시 통치 이데올로기 즉 성리학적 이념질서로의 개편과정과 개편범위는 대체로 지배계급 즉 士族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개편은 전쟁으로 인하여 누적된 정치경제적 현실의 폭발에 기인한다. 그러나 피지배계급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단지 성리학적 이념질서로의 개편의 도구로만 이용되었다.